



EU의 기업결합 규제 개관

1. EU의 기업결합 심사

EU에서 기업결합에 적용되는 법조는 Council Regulation (EC) 139/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the EC Merger Regulation)(2004) OJ L24/1 (“ECMR”)이며 ECMR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 기업결합 당사자의 시장집중(concentration)과 ECMR이 정하는 매출액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시장집중이란 지속적 지배변화(a change of control on a lasting basis)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배(control)란 당사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the possibility of exercising decisive influence on an undertaking)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지배의 변화란(a change of control) i) 두 개 이상의 독립된 기업이 합병하거나 그 부분이 합병되는 경우와 ii) 최소한 하나의 기업을 이미 지배하는 한 명 이상의 사람 혹은 하나 이상의 기업이 다른 기업의 증권이나 자산을 매입하거나 계약 등의 다른 수단에 의해 인수하여 하나 이상의 다른 기업의 전체나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2. 기업결합 신고의 규제 대상

ECMR이 정하는 매출액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는 합병 등 기업 결합이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 기업 결합의 당사자는 사전에 유럽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① 당사자 전부의 전 세계에서 매출액의 합계가 50억 EUR 을 초과할 것, ② 당사자 중 적어도 2개 사의 각각의 공동체 내에서의 매출액이 2억 5,000만 EUR 를 초과할 것, ③ 당사자 각각이 공동체 내 매출액 중 2/3를 초과하는 부분을 동일 가맹국 내에서 얻을 수 없을 것.

또한 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아래의 전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 결합 당사자는 사전에 유럽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관계 사업자 전부의 전세계에서의 합계 연간 매출액이 25억 EUR 를 초과할것, ② 3 개 이상의 가맹국의 각각에 있어 관계 사업자 전부의 연간 매출액의 합계가 1억 EUR 를 초과할 것, ③ 앞의 ② 요건에 합치하는 가맹 3개국의 각각에 있어 관계 사업자 중 적어도 2개 사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2,500만 EUR 를 초과할 것, ④ 관계 사업자 중 적어도 2개 사의 EU 역내에서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1억 EUR 를 초과할 것, ⑤ 관계 사업자의 누구도 단일 가맹국에서 EU 역내에서의 연간 매출액의 2/3을 초과하는 매출을 가지지 않을 것.

3. 기업결합 심사기준

기업결합 심사는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 공동체 시장 또는 그 실질적 부분에서의 유효한 경쟁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되는가 (즉, 공동체 시장과 양립하지 않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관점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기업결합 심사시에는 시장 구조, 공동체 내외의 현실 또는 잠재적인 경쟁, 시장에서의 당사자의 지위, 경제력, 관련 상품의 수급동향, 진입 장벽, 소비자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기술 진보와 경제 발전에의 요인 등이 고려됩니다.

가. Phase I (예비 심사)

회원국 중 결정 권한이 있는 경쟁당국과 위원회는 관련 정보, 인터뷰, 조사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를 통해 예비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심사 결과 (Article 6)]

- 6(1)(a): 시장 집중(concentration)이 Merger Regulation과 무관하면 기업결합 허가
- 6(1)(b): 시장 집중이 공동체 시장과 양립하는데 있어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 허가 (the concentration does not raise serious doubts as to its compatibility with the common market)
- 6(1)(c): 시장 집중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면 Phase II 상세 심사 실시

나. Phase II (상세 심사)

회원국 중 결정 권한이 있는 경쟁당국과 위원회는 관련 정보, 인터뷰, 조사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를 통해 상세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양립 불가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신청 당사자들은 위원회가 수집한 정보 파일을 열람할 권리와 공식적 구두 변론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Declaration of incompatibility is preceded by the issuing of a statement of objections, with a right for the parties to access the file and to request a formal oral hearing) 각국 정부의 직원으로 구성된 “기업 결합에 관한 자문 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f Member States)는 심의를 거쳐 상세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심사 결과 (Article 8)]

- 8(1): 시장 집중이 공동체 시장과 양립한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 허가
- 8(2): 시장 집중이 공동체 시장과 양립될 수 있도록 조건과 의무가 부가하여 기업결합 허가
- 8(3): 공동체 시장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 불가
- 8(4): 심사가 끝나기 전에 기업결합이 진행되었거나 위원회가 부과한 조건을 (a condition for clearance) 위반하여 진행되었다면 기업결합 해체
- 8(5): 임시 조치 (Interim measure)

- 8(6): 신청 시 잘못된 정보를 제출했거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심사 허가 철회

다. Phase II(상세심사)

만약 위원회가 Phase I 심사시 시장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the concentration raises serious doubts) 그 결과를 발표하면 Phase II 심사가 시작되며 최종 결론은 Phase II 절차 시작으로부터 90 영업일 안에 발표되지만 만약 신고 당사자가 Phase II 절차 시작으로부터 55 영업일 안에 commitments 를 제공하겠다고 밝힐 경우 105 영업일 안에 발표될 수 있습니다. 신고 당사자가 동의하여 요청시 20 영업일이 추가적으로 연장될 수 있고 Phase II 의 최장 기간은 125 영업일입니다.

4. 기업결합 신고기한

가. 신고시기

기업결합 당사자는 계약의 완료 후, 공개 입찰 발표(announcement) 시, 지배력 획득(acquisition of control) 시, 혹은 신고를 하고자 하는 선의성실의 의지를 표현(manifestation of good faith intent to do so) 하였을 때 유럽 위원회에 기업 결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 Phase I(예비심사)

Phase I 의 심의 결과는 당사자가 유럽 위원회에 신고하는 날로부터 25 영업일 내에 발표되어야 하며 만약 회원국이 요청을 하거나 당사자가 commitments를 제공하면 35 영업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 Phase II(상세심사)

만약 위원회가 Phase I 심사시 시장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the concentration raises serious doubts) 그 결과를 발표하면 Phase II 심사가 시작되며 최종 결론은 Phase II 절차 시작으로부터 90 영업일 안에 발표되지만 만약 신고 당사자가 Phase II 절차 시작으로부터 55 영업일 안에 commitments 를 제공하겠다고 밝힐 경우 105 영업일 안에 발표될 수 있습니다. 신고 당사자가 동의하여 요청시 20 영업일이 추가적으로 연장될 수 있고 Phase II 의 최장 기간은 125 영업일입니다.

5. 금전적 제재

기업 결합 당사자가 ECMR의 절차를 위반 했을 때 당사자의 매출액의 1%의 벌금이 부과되며 ECMR의 실체법적인 내용을 위반 했을 때 당사자 매출액의 1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정보 제공, 조사 협조, 기업 결합 신청 관련 기한을 넘길 경우 기한을 넘긴 기간에서 매일의 평균 매출액의 5%를 합산한 벌금을 부과합니다.

[유럽 관련 법률 소식]

[공정거래] 유럽 위원회(EU 집행위원회) 조사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최근 이슈

전세계적으로 경쟁당국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위원회(EU 집행위원회)의 광범위한 조사 및 정보 요청 행위에 대해 최근 피조사회사들의 반발이 발생하고 있고, 법원에서의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유럽 위원회는 반경쟁적인 행위가 의심되는 회사에 대해 사전 통지 없이 조사(이른바 “dawn raid(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럽 위원회는 2011. 3. Deutsche Bahn(DB, 독일 국영 철도회사)가 그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이유로 긴급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EU 일반 법원(General Court)에서 분쟁이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DB는 긴급조사는 유럽 위원회가 조사를 할 가치가 있는 위법행위를 사업자가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불특정 사건에 대해 이루어지는 조사이므로, 긴급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유럽 위원회의 과도한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서도 피조사회사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바, 최근 유럽 위원회는 몇몇 유럽 시멘트 회사들(Holcim, Cemex, Heidelberg Cement)이 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들 시멘트 회사들이 최근 10년 간 수행한 수입, 수출, 거래 내역 및 시장 점유율에 관한 자료를 12주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들 시멘트 회사들은 이러한 요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부당하다며 EU 일반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유럽 위원회의 공정거래 관련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유럽 위원회와 피조사회사들과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바, 법원의 결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투자] 한국 기업들의 유럽 화장품, 패션 사업 인수 활발해져

최근 한국기업들의 유럽 화장품 업체나 패션 업체 인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만 하더라도 아모레퍼시픽이 300억원에 프랑스 화장품 회사인 Annick Goutal을 인수하였고, 이랜드는 700억원에 이탈리아 가방 제조업체인 Mandarin Duck을 인수하였습니다. 아울러 EXR은 법정관리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프랑스 패션 하우스인 Jean-Charles de Castelbajac를 한화 45억원에 인수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한국 기업들의 유럽 화장품이나 패션 관련 업체 인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같은 인수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특히 해당 회사 소재 현지 법령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업 일반] 스페인 회사법 개정

최근 스페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업경영의 편의를 증진하고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목적으로 회사법을 개정하였고, 2011년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인바, 현지 자회사 등의 운영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 중 몇몇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웹사이트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 비상장 회사들은 존속 5주년이 되는 날부터 배당가능 이익의 1/3을 배당하여야 합니다. 만일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주주들은 회사에 대해 자신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appraisal right)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다른 주주들로부터 의결권 위임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하는 금융기관들은 최소한 주주총회 7일 이전에 해당 회사에게 위임장을 공개하여 합니다.

[지적재산권] 음악 기록 권리 보호 기간의 연장

2011년 9월 12일 EU 이사회 (EU Council)는 EU 회원국 내에서 연주자 및 음반회사가 갖는 음악 기록에 대한 권리 보호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관련 저작권은 작사가 또는 작곡가 중 더 오래 생존하는 자가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70년 이후에 만료되게 됩니다.

[세종소식]

법무법인 세종, 독일 뮌헨에 유럽사무소 설립

법무법인 세종이 유럽경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독일 뮌헨에 유럽 대표사무소를 11월 16일자로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로펌이 독일에 정식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유럽 대표사무소에는 독일에서 태어나 독일 현지 로펌에서 10여 년간 지적재산권 및 기업법 전문 독일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손동욱(Alexander Son) 변호사가 주재합니다. 손 변호사는 서울 본사의 유럽전문팀 변호사들과 협력해 현지 상황에 적합한 법률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종의 유럽전문팀은 유럽과 한국 기업들간의 거래 및 분쟁에 특화된 팀으로, 유럽법과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 외에도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한•EU FTA 발효로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유럽 현지 사무소 설립을 통해 유럽 기업들의 한국 진출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 및 유럽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에 오픈한 유럽 대표사무소는 법무법인 세종이 중국 북경과 상해 사무소에 이어 세번째로 해외에 설립한 대표사무소입니다.

독일 사무소 연락처

Maximilianstr. 35 80539 München, Germany

T +49 89 24 21 85 27

F +49 89 24 21 82 00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혁 (John H. Choi) 변호사 (전화번호: 02 316 4232, 이메일: jhchoi@shinkim.com)

신준호 (Philippe Shin) 변호사 (전화번호: 02 316 4206, 이메일: pjshin@shinkim.com)

손동욱 (Alexander Son) 변호사 (전화번호: 02 316 1615, 이메일: ason@shinkim.com)

양호인 (David H. Yang) 변호사 (전화번호: 02 316 4670, 이메일: hiyang@shinkim.com)

Seoul Office Tel : + 82 2 316 4114 Beijing Office Tel : + 86 10 8447 5343 Shanghai Office Tel : + 86 21 6235 0411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